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체검사자료 반환 명문화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0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체검사자료 반환 명문화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신체검사자료 반환 명문화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신체검사자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구인자로 하여금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신체검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신체 검사자료를 포함한 채용서류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신설>	-----.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 (신체검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신체검사자료는 구직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신체검사자료는 질병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검사 비용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반환 대상 채용서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문화하는 한편,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체검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

료”로 정의됨에 따라 “신체검사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은바¹⁾, 개정안과 같이 “신체검사자료를 포함한 채용서류”라고 표현할 경우 “채용서류”가 신체검사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²⁾, “신체검사자료 및 채용서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는 일반적인 건강진단서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³⁾,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 적성 정밀검사 결과서⁴⁾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임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 2) 법 제9조에 따라 “신체검사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바, “채용서류”에 “신체검사자료”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신체검사비용을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채용서류에 신체검사자료가 포함되도록 정의규정(법 제2조)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로, “직무 수행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구인자가 채용절차 중 제출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상태 관련 진단서·검사결과서 등”과 같이 “신체검사자료”의 기능과 제출 단계 등을 특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조문⁵⁾에서 채용서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제11조에 대해서만 채용서류의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경우 법 적용 및 해석의 일관성 저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안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채용단계가 서류·필기·면접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채용과정에서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 중 신체검사 관련 서류에 대해서만 서류심사 합격 이후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이하 생략)

5) 법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등